

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 2021므10898 이혼및위자료  
원고, 상고인 원고  
피고, 피상고인 피고  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차종선 외 2인  
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0. 12. 17. 선고 2019르372 판결  
판 결 선 고 2021. 6. 10.

주 문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(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9므3928 판결 참조). 그러나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(민법 제843조,

제839조의2 제2항),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  
고,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  
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.  
그 경우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  
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고, 그에 관하여 법원의 후견  
적 입장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.

원심 제5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그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쌍방이 원심판결 별지 목록  
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소유로 재산분할하는 것과 그 시가가 177,500,000원이라는  
 점에 관하여 모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. 그럼에도 원심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 
 제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위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로 재산분할을 명하였다.

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 
이 있다.

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 
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       대법관            조재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법관            민유숙

주    심            대법관            이동원

대법관      천대엽